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6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 3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정용석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접수일자 2020년 6월 1일 접수번호 제125811호, 202년 5월 25일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수탁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신탁원부 C)
(갑제 1호증 등기사항증명서
갑제 2호증 신탁원부 참조)

2. 신탁계약 해지사유 발생

현데, 최근 몇 년간 피고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의해 이권 이권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선언하는 동시에 이권 소장을 제기하는 바, 자익신탁의 경우 종료의 효력은 선언과 동시에 즉시 발생하므로 소제기로써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신탁은 신탁계약 제5조[수익자] 조항에 의거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으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원금과 이익)을 위탁자 자신이 취득하는 “자익 신탁” 이므로 신탁법 제99조 2항에 의거 위탁자인 원고의 신탁종료선언에 따라 신탁계약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3.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수탁자인 피고는 위 신탁재산을 원고인 위탁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존재하나 이권의무불이행하므로 부득이하게 소제를 제기하는 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는 바이며, 신탁해지 일자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 된 일자인 2024. 1. 31.로 합니다.
2. 그 외 청구원인은 소장 기재 청구원인을 원용합니다.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성북구 동

[도로명주소]

서울시 성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면 적 : 1 층 호 67.6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시 성북구 대 31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11 분의 35.71

- 이 상 -

